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취약계층에 청년 포함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02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 포함 (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Ⅲ. 검토의견

1.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 포함 (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대상, 문화예술 창작·보급 대상 및 공연활동 지원 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및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대상에 문화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을 포함함.
- 문화이용권을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5조의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취약계층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함(안 제18조제8호).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한 문화취약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등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8조제5항제6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문화이용권”이란 <u>문화소외계층</u> 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이</u> ----- ----- ----- ----- ----- ----- ----- -----.
제15조의3(<u>문화소외계층의</u>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	제15조의3(<u>문화취약계층의</u>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
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
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
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에 사용한다.

1. ~ 7. (생략)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창작과 보급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의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

-----문화취
약계층과 「청년기본법」 제3
조에 따른 청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에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
도) -----

-----.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취약계층의-

9. · 10. (생 략)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 ④ (생 략)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 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생 략) ⑥ ~ ⑧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5. (현행과 같음) 6. -----문 화취약계층----- ----- ----- ----- 7.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¹⁾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

- 1)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
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
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문화 및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4³⁾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여행·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⁴⁾에 따라 현재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

-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화이용권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⁵⁾에 따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도 문화소외계층에 포함되어 있음.

○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4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5)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고시)」

I.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수행기관	사업내용	2025년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문화·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4만원) 발급	263,581
청년문화예술패스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예매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연 15만원) 발급	17,000

주) 연간 지원금액은 2025년 사업 기준임(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2023년 11만원, 2024년 13만원으로 연간 지원금액을 늘려왔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한편, 문화예술복지 정책 및 문화이용권 지급의 대상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거나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인 ‘소외’를 ‘취약’으로 대체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과 같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특정 연령대인 ‘청년’을 명시하는 것은 중장년, 고령자 등 다른 연령층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로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지원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행 법령의 경우 「문화기본법」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등에서 문화소외계층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다시 고시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문체부 고시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중 19세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정하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 중으로, 현행 법령으로도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입장임.

- ‘문화소외계층’ 용어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은 모두 사회적으로 도움·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의미하는바, 문화복지 시책의 대상의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실익이 크지 않고,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을 ‘소외계층’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모든 청년에 대하여 문화취약계층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 법률 상에도 취약계층과 청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며, 「청년기본법」⁶⁾ 상에 ‘취약계층청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청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참고로, 사회적으로 도움·보호가 필요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계층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입법례가 모두 존재함.

[유사 입법례]

대상 용어	법률명	조문내용
소외계층	평생교육법	제 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② 교육부장관은 <u>평생교육소외계층</u> 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 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 <u>에너지이용 소외계층</u> "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스포츠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u>스포츠 소외계층</u> 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4(<u>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u>) 국가 유산청장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보건의료 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u>보건의료 취약계층</u> 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u>관광취약계층</u> 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u>안전취약계층</u> 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u>취업취약계층</u>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문 의 처

02)6788-5384

참 고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3	210,2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67만명 대상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1만원) 발급
2024	239,662	"	· 258만명 대상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발급
2025	263,581	"	· 264만명 대상 문화·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4만원) 발급

○ 청년 문화예술패스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4	17,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9세(2005년생) 청년에게 공연·전시 예매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5만원) 발급
2025	17,000	"	· 19세(2006년생) 청년에게 공연·전시 예매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5만원) 발급